#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0668

발의연월일: 2025. 6. 5.

발 의 자:박희승·민병덕·김정호

윤준병 • 서영교 • 정준호

박상혁 • 안호영 • 전진숙

김한규 · 소병훈 · 황명선

김문수 · 이성윤 · 신정훈

의원(15인)

#### 제안이유

쌀은 대한민국 식량안보를 지탱하는 국민의 주식으로 전체 농가 중쌀 생산 농가의 비중이 절반 이상에 달하는 우리 농업의 주요 품목으로 농가의 생산기반과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하나의 축임.

그러나 최근 쌀값이 45년 만의 최대치로 폭락하고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시장격리 등 여러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쌀값 이 회복되지 못했으며, 언제든 최악의 쌀값 폭락 사태가 재연될 수 있 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임시방편적 처방이 아닌 근본적인 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있음.

이에 양곡관리법의 목적에 생산자의 이익 보호와 양곡의 적정한 가격 유지를 명시하고, 공공비축양곡에 밀·콩을 포함하며, 비축·운용에 필요한 비용은 양특회계에서 지출하도록 하여 식량자급률을 제고

하며, 양곡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고, 논타작물재배지원 사업, 의무수입 쌀의 국내 시장 영향을 최소화하는 등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여 지방소멸을 완화하는 동시에 식량안보의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현행법의 목적에 생산자의 이익 보호, 양곡의 적정한 가격 유지, 식량안보, 식량자급률 제고, 농업의 지속가능을 명시함(안 제1조).
- 나. 공공비축양곡을 미곡·밀·콩으로 정의함(안 제2조).
- 다. 양곡수급계획의 내용에 공공비축양곡과 수입양곡의 용도별 수입· 운용 및 적정 재고량 관리, 양곡의 적정 자급목표를 포함하도록 명 시함(안 제3조).
- 라. 정부관리양곡 보관시설 실태 점검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의3 신설).
- 마. 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의 신설).
- 바. 의무수입양곡이 국내 양곡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태조사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수입양곡 관리를 강화함(안 제13조).
- 사. 양곡의 가격이 공정가격(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 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의2 신설).
- 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의 가격이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경우

- 미곡의 초과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16조).
- 자. 양곡의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함(안 제16조의3 신설).
- 차. 미곡의 수급안정 및 논타작물의 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논타작물 재배지원 의무화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의4 신설).
- 카. 선제적 수급조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의 구축·운용 근거와 미곡 공급량의 선제적 조절을 위한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의5·제16조의6 신설).
- 타. 미곡 외의 양곡(밀, 콩 등)의 유통업에 대한 육성 근거를 마련함 (안 제22조).
- 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양곡의 수요 개발과 소비촉진을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

법률 제 호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확보함으로써"를 "확보하고 생산자의 이익을 보호하며 양곡의 적정한 가격을 유지함으로써 식량안보와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고 농업의 지속가능과"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미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을 "미곡·밀·콩" 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중 "정부관리양곡"을 "양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매년 정부관리양곡"을 "제16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심의를 거쳐 매년 양곡"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한다"를 "하고,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 3. 공공비축양곡과 수입양곡의 가공용, 주정용, 사료용, 해외원조용 등 용도별 수입·운용 및 적정 재고량 관리
- 4.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 중 양곡에 관한 사항 제5조제1항 중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를 "제16조의3에 따른 양

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판매가격은"을 "판매가격과 판매시기는 제16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로 한다.

제9조의3 및 제9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9조의3(정부관리양곡 보관 실태점검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부관리양곡 보관시설(이하 이 조에서 "보관시설"이라 한다)에 대 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관 실태를 점검 하여야 한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관시설을 관리하는 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점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관시설을 신축하거나 개수·보수하려는 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의4(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용) ① 농림축산식품 부장관은 정부관리양곡의 매입, 보관, 가공, 공급 등 수급을 종합적 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용할 수 있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관리시스템의 운용 · 관

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매입·판매가격"을 "매입·판매물량은 제16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고, 매입·판매가격"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식량자급률의 증진 및 양곡 수급관리를 위한 미곡·밀·콩 등 공공비축양곡의 비축·운용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기업예산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지출한다.

제1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의무수입양곡(「호주 정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대한민국 정부, 타이왕국 정부, 미합중국 정부 그리고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협정」에 따른 의무수입양곡을 말한다)이 국내 양곡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여야 하며,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료용, 해외원조용으로 공급하는 등 대책을 수립하여 매

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의무수입양곡의 국내 방출이 국산 양곡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양곡 생산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출 물량 및 시기 등을 적극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의무수입양곡 중 일반판매용 또는 가공용으로 사용되는 양곡의 수확기인 경우 제16조제3항에 따라 양곡의 매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국내에 방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5조의2(양곡가격안정제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가격불 안정에 따른 농가의 경영위험을 완화하고 양곡 수급을 안정시켜 소 비자를 보호하며,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양곡의 시장가격이 제3항에 따라 확정·고시된 공정가격(기준가격)[평년가격(직전 5년 중 최저가격과 최고가격을 제외한 평균가격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생산비용 및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격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6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가격 을 말한다. 이하 같다]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이하 "양곡가격안정제도"라 한 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미곡의 경우 양곡가격안정제도의 대상 농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연도에 미곡 재배에 이용된 농지

로 한정하여 실시한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가격안정제도가 필요한 양곡의 대상 품목을 제16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하고 이를 고시한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확정·고시된 양곡가격안정 제도 대상 품목의 공정가격(기준가격)을 제16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가격안정제도의 차액[공정가격(기준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이를 말한다]의 지급비율을 제16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제16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매입·판매 물량의 산정, 매입·판매의 시기·절차"를 "매입·판매의 절차"로, "사항과 생산자단체대표 등과의 협의기구 구성·운영 및 협의 절차에 관련된 사항은"을 "사항은"으로 한다.

- 3. 선제적 수급조절 계획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위기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6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1. 미곡의 가격이 제16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폭락하거나 폭락이 우려되는 경우: 농 업협동조합등을 통하여 해당 연도에 생산되는 미곡에 대한 수요량 을 초과하는 생산량 또는 예상 생산량의 매입. 이 경우 매입가격 은 공공비축미곡의 매입가격으로 한다.

2. 미곡의 가격이 제16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폭등하거나 폭등이 우려되는 경우: 정 부관리양곡의 판매

제16조의2 중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를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의지급대상자 등으로"로 한다.

제16조의3부터 제16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6조의3(양곡수급관리위원회) ① 양곡의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 과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양 곡수급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제16조제1항에 따른 양곡수급안정대책의 수립 및 시행
  - 2. 제16조제2항에 따른 미곡수급안정대책의 수립 및 시행
  - 3. 제1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양곡의 매입·판매여부, 매입·판매물량, 매입·판매시기 및 매입·판매가격
  - 4. 제16조의2에 따른 미곡 재배면적의 조정

- 5. 그 밖에 이 법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과 양 곡의 수급안정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여 부의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 1.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및 식량정책관
- 2. 기획재정부 민생경제정책관
- 3. 농협경제지주회사의 대표이사
- 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장
- ⑤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1. 양곡 수급과 관련이 있는 생산자단체 대표
- 2. 양곡 수급과 관련이 있는 유통인단체 및 소비자단체 대표
- 3. 학계, 연구계 등에서 양곡 수급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의4(미곡의 수급안정 및 논타작물 재배 지원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의 구조적 공급 과잉 문제를 해소하고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와 연계하여벼 및 논에서 재배되는 벼 이외의 작물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정하는 주요 작물(이하 "논타작물"이라 한다)의 재배면적을 연도별로 관리하고, 논타작물의 재배를 지원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하여야한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논타작물의 재배지원을 위하여 생산단지 조성, 시설장비 지원, 판로 지원, 재배기술 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논타작물 재배지원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논타작물 재배지원 시행계획과 그 추진실적을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논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등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16조의5(미곡수급관리시스템 구축·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를 위하여 미곡의 생산, 수요, 재고 등 수 급과 관련된 통계와 관측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 관리하

- 기 위한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을 구축 · 운용할 수 있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통계나 자료의 입력 또는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요청을 받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관 또는 단체 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의 구축 ·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의 구축·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16조의6(미곡의 가격안정을 위한 선제적 수급조절)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해당연도 미곡의 예상 생산량을 추정하여 미곡 공급량을 선 제적으로 조절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1. 농업협동조합등에게 해당연도에 생산된 미곡을 매입하고 판매하게 하는 사업
  - 2. 제1호에 따라 미곡을 매입하는 농업협동조합등에게 판매 손실을 보전하는 사업
- 3. 농업협동조합등과 미곡 생산자 간의 수급조절용 계약재배 사업제21조제1항제1호 중 "제13조"를 "제13조제1항"으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중 "미곡유통업"을 "양곡유통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한다)은 양곡"으로, "미곡 매입 및 매입한 미곡"을 "양곡 매입 및 매입한 양곡"으로, "종합적인 미곡의 유통기능을 담당하는 미곡유통업"을 "종합적인 양곡의유통기능을 담당하는 미곡유통업"을 "종합적인 양곡의유통기능을 담당하는 양곡유통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미곡의"를 각각 "양곡의"로, "미곡종합처리장 등 미곡"을 "미곡종합처리장 등 양곡"으로 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양곡의 수요개발 및 소비촉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수요 개발과 소비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수 있다.

- 1. 국민의 식생활 개선 및 양곡 소비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
- 2. 국민의 양곡 기호 변화에 따른 양곡의 새로운 수요 개발
- 3. 학교급식 및 단체급식에서 양곡 공급 확대를 위한 사업
- 4. 그 밖에 양곡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산 양곡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국산 양곡을 사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1. 국산 원료의 구매자금

- 2. 국산 원료를 사용한 제품개발 및 판로 확대를 위한 자금 제32조제2호 중 "제13조제1호"를 "제13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34조제1호 중 "제13조제3호"를 "제13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36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제9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 2. 제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 3. 제16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통계나 자료의 입력 또는 제출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미곡종합처리장"을 "양곡종합처리장"으로 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양곡의 효율	제1조(목적)
적인 수급관리와 양곡증권정리	
기금의 설치 등을 통하여 식량	
을 안정적으로 <u>확보함으로써</u>	<u>확보하고 생산</u>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	<u>자의 이익을 보호하며 양곡의</u>
로 한다.	적정한 가격을 유지함으로써
	<u>식량안보와 식량자급률을 제고</u>
	하고 농업의 지속가능과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	
다.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공공비축양곡"이란 양곡부	3
족으로 인한 수급불안과 천재	
지변 등의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부가 민간으로부터	
시장가격에 매입하여 비축하	
는 미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	<u>미곡·밀·콩</u>
는 양곡을 말한다.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제3조(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	제3조( <u>양곡</u> 의 수급계획 수립) ①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은 <u>매년 정부관리양곡</u>의 수급 계획(이하 "양곡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 ② 양곡수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2. (생 략)
- 3. 공공비축양곡의 운용에 관한 사항

<신 설>

4. (생략)

- ③ (생 략)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 항에 따라 확정된 양곡수급계 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양곡 매입가격 등의 결정) 제5조(양곡 매입가격 등의 결정)

제16조
의3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양곡
②
1. • 2. (현행과 같음)
3. 공공비축양곡과 수입양곡의
가공용, 주정용, 사료용, 해외
원조용 등 용도별 수입・운용
및 적정 재고량 관리
4.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
정한 자급목표 중 양곡에 관
한 사항
<u>5.</u> (현행 제4호와 같음)
③ (현행과 같음)
4
<u>하고, 지체 없</u>
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
출하여야 한다.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 ① ------조제1항에 따라 양곡을 매입할 때에는 그 매입가격과 매입량 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 다.
- ② (생략)
- 제9조(정부관리양곡의 판매) ① 제9조(정부관리양곡의 판매) ① (생 략)
  - ② 제1항에 따른 정부관리양곡 의 판매가격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한다.

③ ~ ⑤ (생 략) <신 설>

- --제16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 ② (현행과 같음)
- (혂행과 같음)
- ---판매가격과 판매시기는 제1 6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 ③ ~ ⑤ (현행과 같음)
- 제9조의3(정부관리양곡 보관 실 대 점검 등) ① 농림축산식품 부장관은 정부관리양곡 보관시 설(이하 이 조에서 "보관시설" 이라 한다)에 대하여 농림축산 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그 보관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 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실시하

<신 설>

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관시설을 관리하는 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 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점검 결 과를 공표할 수 있다.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 관시설을 신축하거나 개수·보 수하려는 자에게 농림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 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의4(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운용) ① 농림축 산식품부장관은 정부관리양곡 의 매입, 보관, 가공, 공급 등 수급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용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 항에 따른 종합관리시스템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관계 행 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 용) ①・② (생 략)

가격은 매입・판매지역의 당시 시장가격으로 한다.

<신 설>

④ (생 략)

등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 우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 다.

③ 제1항에 따른 종합관리시스 템의 구축・운용에 필요한 사 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 한다.

제10조(공공비축양곡의 비축・운 제10조(공공비축양곡의 비축・운 용)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공공비축양곡의 매입・판매 ③ ------매입・판매 물량은 제16조의3에 따른 양곡 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고, 매입・판매가격-----

> ④ 식량자급률의 증진 및 양곡 수급관리를 위한 미곡・밀・콩 등 공공비축양곡의 비축・운용 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기업 예산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지출한 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13조(수입양곡의 관리 등) (생략)

<신 설>

<신 설>

<신 설>

제13조(수입양곡의 관리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의무 수입양곡(「호주 정부, 중화인 민공화국 정부, 대한민국 정부, 타이왕국 정부, 미합중국 정부 그리고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협정」에 따른 의무 수입양곡을 말한다)이 국내 양 곡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 여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여야 하며,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사료용, 해외원조 용으로 공급하는 등 대책을 수 립하여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 워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의무수입양곡의 국내 방출이 국산양곡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양곡 생산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출 물량 및 시기 등을 적극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

<신 설>

항에 따른 의무수입양곡 중 일 반판매용 또는 가공용으로 사용되는 양곡의 수확기인 경우 제16조제3항에 따라 양곡의 매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국내에 방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의2(양곡가격안정제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가격불안정에 따른 농가의 경 영위험을 완화하고 양곡 수급 을 안정시켜 소비자를 보호하 며,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하 여 양곡의 시장가격이 제3항에 따라 확정・고시된 공정가격 (기준가격)[평년가격(직전 5년 중 최저가격과 최고가격을 제 외한 평균가격을 말한다)을 기 준으로 하되 생산비용 및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고 예산의 범 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격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6조 의3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가격

을 말한다. 이하 같다]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이하 "양곡가격 안정제도"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미곡의 경우 양곡가격안정제도의 대상 농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연도에 미곡 재배에 이용된 농지로한정하여 실시한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 가격안정제도가 필요한 양곡의 대상품목을 제16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 항에 따라 확정·고시된 양곡 가격안정제도 대상 품목의 공 정가격(기준가격)을 제16조의3 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고 시한다.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 가격안정제도의 차액[공정가격 (기준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이 를 말한다]의 지급비율을 제16

제16조(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수급 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양곡의 가격안정을 위 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양곡수급 안정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2. (생략)

<신 설>

- ②・③ (생략)
- ④ 제3항에 따라 미곡을 매입하는 경우 그 물량은 해당 연도에 생산되는 미곡에 대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미곡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되거나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 이상 또는 이하를 매입하게 할수있다.

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제16조(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수급 관리) ① -----

--.

- 1. 2. (현행과 같음)
- 3. 선제적 수급조절 계획
- ②·③ (현행과 같음)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 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기 상 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6 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1. 미곡의 가격이 제16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기준 이 상으로 폭락하거나 폭락이 우려되는 경우: 농업협동조합등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양 곡의 생산량 및 수요량 추정의 방식, 매입・판매 물량의 산정, 매입·판매의 시기·절차, 매입 물량의 보관 등 매입 또는 판 매에 필요한 사항과 생산자단 체대표등과의 협의기구 구성・ 운영 및 협의 절차에 관련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 (6)·(7) (생 략)

재배면적 관리) 농림축산식품 재배면적 관리) ------부장관은 제16조제3항에 따라

을 통해 해당 연도에 생산되 는 미곡에 대한 수요량을 초 과하는 생산량 또는 예상 생 산량의 매입. 이 경우 매입가 격은 공공비축미곡의 매입가 격으로 한다.

2. 미곡의 가격이 제16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기준 이 상으로 폭등하거나 폭등이 우 려되는 경우: 정부관리양곡의 판매

(3)	
	-
<u>매입·판매의 절차</u>	_
	-
<u>사항은</u>	_
·	

⑥·⑦ (현행과 같음)

제16조의2(가격안정을 위한 미곡 제16조의2(가격안정을 위한 미곡

미곡을 매입한 경우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 산자단체대표등과 협의하여 미 곡을 재배하고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에게 미곡 재배면적을 조정하 게 할 수 있다.

<신 설>

-----「농업·농촌 공 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 영에 관한 법률 | 제15조에 따 의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자 | 른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자 등으로-----

제16조의3(양곡수급관리위원회)

- ① 양곡의 수급안정을 위한 정 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 축산식품부에 양곡수급관리위 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심의한다.
- 1. 제16조제1항에 따른 양곡수 급안정대책의 수립 및 시행
- 2. 제16조제2항에 따른 미곡수 급안정대책의 수립 및 시행
- 3. 제1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 른 양곡의 매입・판매여부, 매입 • 판매물량, 매입 • 판매

- 시기 및 매입・판매가격
- 4. 제16조의2에 따른 미곡 재배 면적의 조정
- 5. 그 밖에 이 법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과 양곡의 수급안정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농림축산식
- 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제3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

품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당연

1.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및 식량 <u>정책관</u>

다.

- 2. 기획재정부 민생경제정책관
- 3. 농협경제지주회사의 대표이 사
- 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 측센터장
- ⑤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사항에

<신 설>

해당하는 사람 중 농림축산식 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 는 사람이 5명 이상 포함되어 야 한다.

- 1. 양곡 수급과 관련이 있는 생산자단체 대표
- 2. 양곡 수급과 관련이 있는 유통인단체 및 소비자단체 대표3. 학계, 연구계 등에서 양곡수급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가게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당로 정한다.

전문성을 가진 사람

제16조의4(미곡의 수급안정 및 논타작물 재배 지원 등) ① 농 립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의 구 조적 공급 과잉 문제를 해소하고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식량 및 주요 식품의적정한 자급목표와 연계하여

변 및 논에서 재배되는 벼 이 외의 작물 중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주요 작물(이하 "논타작물"이라 한다)의 재배면 적을 연도별로 관리하고, 논타 작물의 재배를 지원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논타 작물의 재배지원을 위하여 생산단지 조성, 시설장비 지원, 판로 지원, 재배기술 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 항에 따른 논타작물 재배지원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 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 우 논타작물 재배지원 시행계 획과 그 추진실적을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논타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등에

<u><신 설></u>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한다.

제16조의5(미곡수급관리시스템 구축・운용) ① 농림축산식품 부장관은 미곡의 효율적인 수 급관리를 위하여 미곡의 생산, 수요, 재고 등 수급과 관련된 통계와 관측자료 등을 체계적 으로 수집, 분석, 관리하기 위 한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용할 수 있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 항에 따른 미곡수급관리시스템 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 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통계나 자료의 입력 또 는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요청을 받은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 간기관 또는 단체 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 라야 한다.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 항에 따른 미곡수급관리시스템 의 구축・운용을 대통령령으로

<신 설>

제21조(영업정지 등) ① 특별자치 저 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9조제1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미곡수급관리 시스템의 구축·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16조의6(미곡의 가격안정을 위한 선제적 수급조절) 농림축산 식품부장관은 해당연도 미곡의 예상 생산량을 추정하여 미곡 공급량을 선제적으로 조절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1. 농업협동조합등에게 해당연 도에 생산된 미곡을 매입하고 판매하게 하는 사업
  - 2. 제1호에 따라 미곡을 매입하는 농업협동조합등에게 판매손실을 보전하는 사업
  - 3. 농업협동조합등과 미곡 생산 자 간의 수급조절용 계약재배 사업

제21조(영업정지 등	등) ①	
-------------	------	--

\_\_\_\_\_

항에 따라 신고를 한 양곡가공 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 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범 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을 정지 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또는 제12호 에 해당하면 영업소 폐쇄를 명 하여야 한다.

- 1. (생략)
- 2. <u>제13조</u>에 따른 명령을 위반 한 경우
- 3. ~ 13. (생략)
- ② ~ ③ (생 략)

제22조(미곡유통업의 육성) ① 농 전 립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의 유 통구조개선・품질향상 및 가격 안정을 위하여 생산자로부터의 미곡 매입 및 매입한 미곡의 건조・선별・보관・가공・판매 등 종합적인 미곡의 유통기능을 담당하는 미곡유통업을 육 성하여야 한다.

1. (현행과 같음)
2. <u>제13조제1항</u>
3. ~ 13.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Ⅱ22조( <u>양곡유통업</u> 의 육성) ① <u>농</u>
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특별시장
·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
<u>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u>
군수·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한다)은
양곡
<u>양곡 매입 및 매입한</u>
양곡
종합적인 양곡의 유통
기능을 담당하는 양곡유통업

② <u>농림축산식품부장관</u>은 농업 협동조합이나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u>미곡의</u> 유통기능을 능률 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 되는 자에게 <u>미곡종합처리장</u> 등 미곡을 건조·보관·가공· 유통·판매하는 시설의 설치 및 <u>미곡의</u> 매입에 필요한 자금 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융 자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생 략) <신 설>

<u>.</u>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
<u> 방자치단체장</u>
<u>으</u> 곡의
미고조하치コ자 코조하치
<u>미곡종합처리장, 콩종합처</u>
<u>리장 등 양곡</u>
<u>양곡의</u>
③ (현행과 같음)
제22조의2(양곡의 수요개발 및
소비촉진) 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양곡의 수요 개발과 소
비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의 식생활 개선 및 양곡
소비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사업
2. 국민의 양곡 기호 변화에 따
른 양곡의 새로운 수요 개발
3. 학교급식 및 단체급식에서
양곡 공급 확대를 위한 사업

- 제3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저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생략)
  - 2. <u>제13조제1호</u> 또는 제2호에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수입양곡을 사용・처분한 자
  - 3. 4. (생략)
- 제3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저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 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3조제3호에 따른 명령을 1. 제13조제1항제3호----

4. 그 밖에 양곡 소비를 촉진하
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업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산
양곡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국
산 양곡을 사용하는 기업에 대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
<u>원할 수 있다.</u>
1. 국산 원료의 구매자금
2. 국산 원료를 사용한 제품개
발 및 판로 확대를 위한 자금
ll32조(벌칙)
1. (현행과 같음)
2. 제13조제1항제1호
3.・4 (현행과 같음)
∥34조(벌칙)

위반한 자

2. ~ 8. (생략)

제3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제36조(과태료) 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1. ~ 6. (생 략)

② (생략)

2. ~ 8. (현행과 같음)

- 1. 제9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 2. 제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 3. 제16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통계나 자 료의 입력 또는 제출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 4. ~ 9. (현행 제1호부터 제6 호까지와 같음)
- ② (현행과 같음)